

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증개정조례(안) 심 사 보 고 서

1999. 7. 24.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9년 7월 7일 영등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1999년 7월 9일
- 다. 상 정 일 자 : 1999년 7월 16일 제65회(임시회) 제1차 행정위원회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행정관리국장 김종박)

- 가. 제안이유
중전 호적법은 호적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금액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운용토록 하였으나, '95. 6. 5 호적법시행규칙 개정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에 직접 규정한 바, 우리구 조례의 부과대상 및 금액 관련 조문과 중복됨으로 우리구 조례중 중복조항을 삭제하여 과태료 부과·징수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.
- 나. 주요골자
 - 과태료 부과대상 “별표1” 삭제(안 제3조)
(호적법 제130조, 제1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를 적용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송성만)

동 조례안은 호적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나, '95년 6월 5일자로 호적법시행규칙 개정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고자 제52조제6항의 규정 별표에 과태료 금액을 명시함으로써 우리 구 관련 조례 과태료 부과대상내역 <별표1> 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됨

4. 심사결과 : 원안 의결

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증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61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7. 7.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중전 호적법은 호적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금액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운용토록 하였으나, '95. 6. 5 호적법시행규칙 개정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

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에 직접 규정한 바, 우리 구 조례의 부과대상 및 금액 관련 조문과 중복됨으로 우리 구 조례중 중복조항을 삭제하여 과태료 부과·징수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과태료 부과대상 “별표1” 삭제(안 제3조)
(호적법 제130조, 제1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를 적용)

3. 토의과제 : 없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
 - 호적법 제130조, 제131조
 - 동법 시행규칙 제52조
- 나. 관련문서 : 기에 05090 - 1589('99. 5. 28)
- 다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.
- 라. 협의부서 : 협의처 없음.

따로붙임 : 1)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2)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=====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부과대상) 과태료 부과대상은 별표1과 같다	제3조(부과대상) 삭 제

(별표1)

과태료부과대상(제3조 관련)

부 과 대 상	근 거 법 령	과 태 료 금 액	
		법 제130조 해당 경우	법 제131조 해당 경우
1. 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(출생신고)	법 제49조 법 제51조	5만원	10만원
2. 기아를 찾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(호적정정신청)	법 제58조	5만원	10만원
3.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인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(재판에 의한 인지신고)	법 제63조	5만원	10만원
4. 유언집행자 취임일부터 1월 이내에 인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(유언에 의한 인지신고)	법 제64조	5만원	10만원
5. 사산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사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(인지 태아의 사산신고)	법 제65조	5만원	10만원
6. 재판의 확정일부터 1월 이내에 입양 취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(입양 취소신고)	법 제71조	5만원	10만원
7.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파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(재판에 의한 파양신고)	법 제75조	5만원	10만원
8. 재판의 확정일부터 1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(재판에 의한 혼인신고)	법 제76조의 2	5만원	10만원
9. 재판의 확정일부터 1월 이내에 혼인취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(혼인취소신고)	법 제78조	5만원	10만원
10. 재판의 확정일부터 1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(재판에 의한 이혼신고)	법 제81조	5만원	10만원
11. 부모가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거나 변경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친권자 지정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(부모의 친권자 변동신고)	법 제82조 제1항	5만원	10만원
12. 재판의 확정일부터 1월 이내에 친권이나 관리권의 상실, 사퇴, 회복, 지정,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(친권 또는 관리권의 상실, 사퇴, 회복, 지정, 변경에 따른 친권자 변동신고)	법 제82조 제2항	5만원	10만원
13. 후견인 취임일부터 1월 이내에 후견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(후견개시신고)	법 제83조	5만원	10만원
14. 후임자 취임일부터 1월 이내에 후견인 경질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(후견인경질신고)	법 제84조	5만원	10만원

부 과 대 상	근 거 범 령	과 태 료 금 액	
		법 제130조 해당인 경우	법 제131조 해당인 경우
15. 후견 종료일부터 1월 이내에 후견종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(후견종료신고)	법 제86조	5만원	10만원
16. 사망의 사실을 안 날(발생한 날)부터 1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(사망신 고)	법 제87조	5만원	10만원
17. 사망자를 인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 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(본적 불명자, 인식 불능자의 사망)	법 제93조	5만원	10만원
18. 재판 확정일부터 1월 이내에 실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(실종신고신고)	법 제95조	5만원	10만원
19. 호주승계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 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(호주승계신고)	법 제96조	5만원	10만원
20. 호주승계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승계의 사 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신고서를 발송 하지 아니한 자(승계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호주승계신고)	법 제96조 제3항	5만원	10만원
21. 재판의 확정일부터 1월 이내에 호주승계 회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(호주승계회복신 고)	법 제100조	5만원	10만원
22. 폐가 또는 무후가가 된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일가창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(일가창립의 신고)	법 제106조	5만원	10만원
23. 국적법 제11조에 의한 고시일부터 1월 이 내에 귀화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(귀화신고)	법 제109조	5만원	10만원
24. 국적상실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(국적상실신 고)	법 제110조	5만원	10만원
25. 법무부장관의 허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국적회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(국적회복신고)	법 제112조	5만원	10만원
26.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 에 개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(개명신고)	법 제113조	5만원	10만원
27.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 에 취적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(취적신고)	법 제116조	5만원	10만원
28.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취적신 고를 하지 아니한 자(판결에 의한 취적신고)	법 제119조	5만원	10만원
29. 호적정정허가 재판이 있었을 때 1월 이내 에 호적정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(허가의 호적정정신청)	법 제122조	5만원	10만원
30.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월 이내에 호적정 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(판결에 의한 호적 의 정정신청)	법 제123조	5만원	10만원